



통합 민원 정책 및 절차

Bright Star Schools("차터 스쿨") 이사회는 연방법 및 주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본 통합 민원 처리 절차("UCP")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차터 스쿨은 연방법 및 주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규정을 준수할 주요 책임을 지는 지역 교육 기관입니다. 본 정책에 따라, 법규 준수 및/또는 조사 수행 책임자는 자신이 조사하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위

이 민원 절차는 민원 처리를 위한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며, 모든 민원이 UCP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차터 스쿨의 고용 정책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교실 과제, 성적, 졸업 요건, 직원 채용 및 평가, 숙제 정책과 관행, 학생 진급 및 유급, 학생 징계, 학생 기록, 브라운 법(Brown Act), 기타 일반 교육 요건에 관한 많은 우려 사항은 UCP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터 스쿨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UCP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 본 민원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UCP의 주제 범위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UCP 민원이란 연방법 또는 주법이나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서명된 서면 진술서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혈통, 피부색, 정신 장애, 신체 장애, 민족 집단 정체성, 이민 신분, 시민권, 성 표현, 성 정체성, 성별, 유전 정보, 국적, 출신 국가, 인종 또는 민족, 종교, 건강 상태, 혼인 여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특성들의 조합, 또는 해당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과의 연관을 이유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민원. 이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의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 혹은 그 조합에 기반한 차별 행위는 차터 스쿨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불법이며, 교육법 섹션 243(a) 또는 244(a)의 불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다음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
 - 임신 중이거나 부모이거나 수유 중인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 성인 교육 프로그램;
 - 기술 및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보육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

- 이주 아동 교육 프로그램;
- 통합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
- 위탁 보호 중인 학생, 노숙 학생, 소년 법원 출신이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동 아동 및 군인 자녀의 교육 또는 졸업;
-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및/또는
-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

3.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래에 정의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수업료(pupil fee)를 지불하도록 요구받았다는 민원.

a. “교육 활동”이란 차터 스쿨에서 제공하는 활동으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의 통합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정규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학생 수업료”란,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예치금 또는 기타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법 제49011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IX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은 교육 활동을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가족의 지불 능력 또는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Hartzell v. Connell (1984) 35 Cal.3d 899 참조). 학생 수업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학교 등록 또는 수업 등록을 위한 조건, 또는 교과나 과외 활동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선택 수업인지, 필수 수업인지, 학점 부여 여부와 무관함).

ii. 학생이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도구, 악기, 유니폼 또는 기타 자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비용.

iii. 학생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물품, 공급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구매 비용.

c. 학생 수업료, 지역 통제 및 책무성 계획(“LCAP”) 또는 교육법 243조 및 244조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민원이 관련 법률의 위반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식별 서명이 없는 익명 민원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d. 차터 스쿨이 학생 수업료 관련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캘리포니아 교육부(“CDE”)가 항소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차터 스쿨은 영향을 받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전액 환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주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e. 본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기부금 또는 재산의 자발적인 기부 요청, 기금 모금 활동의 자발적 참여, 또는 차터 스쿨 및 기타 기관이 기금 모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지역 통제 기금 공식("LCFF") 또는 교육법 제47606.5조 및 제47607.3조에 따른 LCAP의 요건 위반에 대한 민원. 차터 스쿨이 LCAP 외에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을 채택하는 경우, 교육법 제64000조, 64001조, 65000조 및 65001조에 따른 학교 계획 요건 위반에 대한 민원도 본 정책의 적용 대상입니다.

차터 스쿨은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불법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 민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사자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됩니다. 여기에는 민원인의 신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차터 스쿨은 민원인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으나, 민원인의 신원을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차터 스쿨은 법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민원 또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CEO 또는 지정인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차터 스쿨은 민원인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준수 책임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준수 책임자(compliance officer)를 지정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차터 스쿨이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Angelina Calderón, 대외협력 부사장
acalderon@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내선 1023

CEO 또는 지정인은 민원을 조사할 책임을 가진 준수 책임자가 그들이 담당하는 법률과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준수 책임자는 CEO 또는 지정인의 판단에 따라 법률 자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CEO를 상대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의 준수 책임자는 차터 스쿨 이사회의 의장으로 지정됩니다.

통지

교장 또는 지정인은 본 정책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정책의 연례 공지 사항은 차터 스쿨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차터 스쿨은 매년 차터 스쿨의 UCP에 관한 서면 통지를 직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자문 위원회, 사립학교 관계자 또는 대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례 통지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만약 차터 스쿨에 등록된 학생 중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동일한 제1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연례 통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해당 제1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연례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UCP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민원 유형과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주 및 연방법의 민원 관련 조항 목록.
2. 차터 스쿨이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 보건 및 안전법 제1596.792(o)조 및 해당 Title 5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면허 면제 상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Title 22 면허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차터 스쿨이 주 및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할 주요 책임이 있다는 설명.
4.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
5. 민원 담당자의 직책명과 해당 직위를 현재 맡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알려진 경우 포함)을 명시한 설명.
6. CDE에 직접 접수된 UCP 민원이 직접 개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CDE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서면 결정을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단, 당사자 간 기한 연장에 합의했거나 CDE가 예외적 상황을 문서화하고 민원인에게 알린 경우는 예외).
7. 민원인은 차터 스쿨의 결정에 대해 서면 항소를 통해 CDE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차터 스쿨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단, 차터 스쿨이 UCP를 사용하여 UCP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제외).
8. 차터 스쿨의 결정에 대해 CDE에 항소한 민원인은 CDE로부터 항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민원인과의 서면 합의 또는 CDE가 예외적 상황을 문서화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

9. 차터 스쿨 또는 CDE가 UCP 민원 또는 항소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차터 스쿨은 영향을 받은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 해당 조치는 현행법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함.

10.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관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민사 구제책 및 교육법 제262.3조에 따른 항소권에 대한 안내 진술.

11. 차터 스쿨의 UCP 사본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진술.

기밀 유지 및 보복 금지

차터 스쿨은 민원인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신원이 적절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절차

다음 절차는 위의 “적용 범위” 항목에 명시된 연방법 또는 주법이나 규정을 차터 스쿨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민원 담당자는 모든 민원 및 이후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민원이 접수될 때, 민원 관련 회의나 청문회가 예정될 때, 그리고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질 때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민원 접수

누구든지, 그 사람의 적법한 대리인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공공기관 또는 조직은 본 정책에 따라 불법적인 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관한 서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관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에 의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특정 집단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 자, 또는 특정 학생이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적법한 대리인.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조사는 아래의 기간 내에 민원을 접수해야 시작됩니다: 해당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민원인이 처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단, 민원 접수 시한은 민원인의 서면 요청과 사유 설명을 기반으로, CEO 또는 그 지정자의 서면 승인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CEO는 연장 요청 수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정책 하의 다른 모든 민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LCAP(지역 통제 및 책무 계획) 관련 민원의 경우, 위반일은 차터 스쿨 이사회가 해당 LCAP 또는 연례 갱신안을 승인한 날로 간주합니다.

차터 스쿨.

민원은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민원 담당자는 수신된 민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민원에는 코드 번호 및 날짜 스탬프가 부여되며, 이후 관련 조치는 감독 기관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기록됩니다.

본 정책에 따라 제출된 민원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서명은 자필, 타이핑(이메일 포함), 또는 전자 방식으로 생성된 것도 유효합니다. 단, 학생 수업료, LCAP 또는 교육법 제243조 및 244조 위반에 대한 민원만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민원인이 장애 또는 문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터 스쿨 직원은 민원 접수 작성을 도울 것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담당자는 해당 민원이 UCP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UCP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2단계: 중재 (선택 사항)

민원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과 중재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중재에 동의할 경우, 민원 담당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민원에 대한 중재를 시작하기 전, 민원 담당자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가 관련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민원인과 차터 스쿨 양측이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민원 담당자(또는 지정자)는 중재 절차가 언제든지 차터 스쿨 또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은 바로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중재 절차가 민원인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민원 담당자는 민원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 사용은 민원인이 서면으로 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차터 스쿨의 조사 및 해결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단계: 민원 조사

민원 담당자는 민원 접수일 또는 중재 실패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사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회의는 민원인 및/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로 민원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민원 담당자는 관련 차터 스쿨 기록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모든 조치를 임의의 순서로 수행해야 합니다:

-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차터 스쿨의 대표에게 민원 또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위반 혐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특정 민원 사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민원 담당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민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터 스쿨이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에 관련된 기록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한 구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서면 결정

차터 스쿨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조사 보고서(“결정”)를 발행합니다. 차터 스쿨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 민원인과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차터 스쿨의 결정은 영어로 작성되며, 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민원인의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판단.
2. 각 주장에 대해 차터 스쿨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3. 민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구제 조치.
4. 차터 스쿨의 결정에 대해 민원인이 30일 이내에 CDE(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 단, 차터 스쿨이 UCP를 사용해 비대상 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제외.
5. 항소 절차에 대한 안내.

직원이 민원 결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결정문에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해당 직원이 차터 스쿨의 기대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 명시되며,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징계 조치의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CDE(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대한 항소

민원인이 결정(Decision)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DE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차터 스쿨에 제출된 민원의 사본과 결정문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CDE에 항소할 때는 민원인은 항소 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차터 스쿨이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2. 민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차터 스쿨의 결정은 법적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실 판단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3. 차터 스쿨의 결정에 있는 핵심 사실 판단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4. 차터 스쿨의 결정에서 내린 법적 결론이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 차터 스쿨이 위반 사항을 인정한 경우에도, 구제 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CDE가 민원이 항소되었음을 통보받으면, CEO 또는 지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CDE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원본 민원의 사본
2. 결정문의 사본
3. 조사 파일 사본 (모든 노트, 인터뷰, 문서 포함)
4. 민원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
5. 차터 스쿨의 민원 처리 절차 사본
6. CDE가 요청한 기타 관련 자료

CDE가 항소에서 다루는 사안이 원 민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차터 스쿨로 반환되어 새로운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CDE가 차터 스쿨에 대해 통보한 민원이 UCP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경우, 차터 스쿨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된 결정서를 통해 해당 항목을 처리하고 CDE와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수정된 결정서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항소할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CDE 항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든지 주 교육감(SSPI) 또는 그 지명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은 결정의 사실 판단, 법적 결론 또는 구제 조치에 대한 이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SSPI는 항소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주의 하에 알 수 없었던 정보만을 고려하며,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CDE 항소 결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법원이 중지시키지 않는 한).

차터 스쿨이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민원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 C.C.R. 제4650조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E는 차터 스쿨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민원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은 SSPI(주 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SSPI는 차터 스쿨의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직접 제출의 근거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SSPI에 제시해야 합니다.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과 수유 중인 학생에 대한 편견의 제공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교육 형평성 UCP 항소 사무소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319-8239

LCAP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지방 기관 시스템 지원 사무소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319-0809

학생 수업료 또는 기타 모든 교육 프로그램 관련 민원에 대한 결정의 항소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범주별 프로그램 민원 관리 사무소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319-0929

민사적 구제 수단

고소인은 차터스쿨의 민원 절차 외에도 사용 가능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중재 센터 또는 공공/민간 이익을 위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에는 금지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법에 따라 제기된 불법 차별 관련 민원의 경우, 고소인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항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달력일 기준)이 경과한 후에야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 기간은 금지명령 등 긴급 구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차터스쿨이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고소인에게 고소 제기 권리를 통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